

산자부, 10-11월 LPG 품질검사 실시

산업자원부가 10-11월 1개월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LPG 품질검사를 실시한다.

액화석유가스(LPG)는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으나,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이 부적정하면 가스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우려가 제기되어 왔고, 특히 2001년 7월부터 LPG 중 부탄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돼 유통사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값이 싼 프로판을 부탄 대신 다량 혼합하면 가스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.

산자부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 LPG품질기준제도의 신규도입에 따라 전국의 생산 및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들어갔다.

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

항목		종류	1호 (가정·상업용)	2호(자동차·캐비넷히터용)		3호
				여름용	겨울용	
필수 기준	조성 (mol%)	C ₃ 탄화수소	90이상	10이하	15 35이하	-
		C ₄ 탄화수소	-	85이상	60이상	85이상
		부타디엔	0.5이하			
	잔류물질 (100ml 증발잔류물, ml)		0.05이하			
	증기압(40°C, MPa)		1.53이하	1.27이하		0.52이하
권고 기준	황분(ppm)		100이하	200이하		200이하
	밀도(15°C, g/cm ³)			0.50 0.62		
	동판부식(40°C, 1h)		1이하			
	수분		합격			

+ 겨울용은 생산 및 수입단계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, 유통단계는 11월1일부터

다음해 4월30일까지 적용하고, 11월 및 4월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을 공통으로 적용함

++ 2호(자동차용) 중 이소부탄 30mol% 이상은 겨울용 C₃ 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%로 함

+++ 대형 승합차용,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은 C₃ 탄화수소와 C₄ 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않음

점검기간은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로 주1회씩 총 4회 실시하며, 검사팀은 시·도 및 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4명씩 4개조 편성하고, 검사대상은 생산(수입)단계 11개, LPG충전소 32개 등 43개소이다.

검사결과 위반이 발견되면 LPG충전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.

즉, 석유정제업자·LPG수입사 및 석유화학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등 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병과가 가능하고, LPG충전사업자·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병과가 가능하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1/ 10/ 11>